

	<h2 style="margin: 0;">직제규칙</h2>	규정번호	3-1-3
		제정일자	1998.0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Ver. 19
		총페이지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및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의하여 본 대학의 조직 및 구성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행정의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정관, 학칙 및 기타 본 대학의 각종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본 대학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 2010.4.1., 2011.1.1., 2012.10.11., 2013.6.1., 2013.9.11., 2014.4.9., 2015.3.1., 2015.9.1., 2018.4.1.>

제4조(정원) 본 대학 교직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기타 시행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구성원

- 제5조(교원, 일반직원 및 조교)** ① 본 대학에 총장,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 <개정 2012.10.11.>
 ③ 일반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④ 제2항의 교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 산업체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10.11.>

제 4 장 기 구

- 제6조(총장 등)**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본 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 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 부총장 유고 시는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각 부서의 장 등) ① 제3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11., 2015.9.1.>

1. 처장,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한다.
2. 학부(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3. 사무처장은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7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6., 2015.9.1.>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부처장과 학생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입서관리팀, 교육운영팀, 학생지원팀, 학생서비스센터를 둔다.<개정 2010.5.1., 2013.6.1., 2013.9.11.>

② 교학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3.9.11.>

제8조의2(학생서비스센터) ① 학생서비스센터장은 학생부처장이 겸하며 학생지원팀 업무와 학생관련 제 민원업무(학생서비스센터 업무), 보건실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1., 2013.6.1.>

② 학생서비스센터에 두는 직원의 수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의 현원으로 한다.

제8조의3(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1., 2013.9.11.>

제9조(산학협력처) ①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지원팀과 취업창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3.6.1., 2013.9.11., 2014.4.9.>

② 산학협력처장의 업무는 산업기술연구소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기획예산팀과 인사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3.4.1., 2013.6.1., 2013.9.11.>

② 기획처에 대학기획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4.1.>

④ 기획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총무팀, 관리영선팀, 경리팀을 둔다. <개정 2013.9.11.>

② 사무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합정보지원실<개정 2006.12.26.>) ① 종합정보지원실에 정보지원팀을 두며 종합

정보지원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② 종합정보지원실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삭제 <2006.12.26.>

제12조의2(중앙전자계산소) 삭제 <2006.12.26.>

제12조의3(부속 및 부설기관 등) ① 본 대학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현원은 법인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수회) ①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둔다.

-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0.11.>
- ③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에 의한다.

제14조(위원회) ① 본 대학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부속시설 등) 삭제 <2006.6.20.>

제16조(임기) 교원으로 겸보하는 각 부서의 장의 임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5.9.1.>

1. 부총장 및 대학본부 각 처장(사무처장 제외), 학부(과)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각 부서 및 학부(과)의 하부 조직 책임자(일반직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업무 분장

제17조(업무분장 및 위임 전결)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은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제13조 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팀의 개편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및 기술창업지원센터의 존치기간) 제3조(기구) 및 별표(기구조직표)에도 불구하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및 기술창업지원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존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4.1.>

기구 조직표

